#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46

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신영대·신정훈·허 영

이장섭 · 서삼석 · 전재수

박찬대 • 한병도 • 이병훈

황 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고용노동부는 「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"고용위기지역"의 지정기준, 지원기간,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·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·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에 도, 지정요건,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하고, 행정·재정·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 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건의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·재정·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 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⑥ 제3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,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2조(업종별・지역별 고용조정  | 제32조(업종별・지역별 고용조정      |
| 의 지원 등) ①・② (생 략)  | 의 지원 등) ①·② (현행과 같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♥</u> )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고용감소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있다.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④ 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지정을 건의받은 고용노동부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으로 지정할 수 있다.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⑤ 제4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으로 지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장은 행정·재정·금융 등 분</u> |
|                    | 야별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수 있다.</u>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⑥ 제3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       |

장,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 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